법률구조사건 처리규칙

(제정 1987.10. 5.)
(전면개정 1988. 8. 9.)
(개정 1990. 6. 2.)
(개정 1990. 11. 7.)
(개정 1992. 11. 19.)
(개정 1993. 10. 4.)
(개정 1995. 1. 18.)
(개정 1995. 5. 20.)
(전면개정 1996. 5. 31.)
(개정 1998. 8. 7.)
(개정 1998. 10. 8.)
(전면개정 1998. 12. 31.)
(개정 1999. 1. 30.)
(개정 1999. 6. 30.)
(개정 1999. 12. 21.)
(개정 1999. 12. 29.)
(개정 2000. 3. 31.)
(개정 2000. 6. 8.)
(개정 2000. 9. 28.)
(개정 2000. 12. 27.)
(개정 2001. 9. 17.)
(개정 2002. 8. 27.)
(개정 2002. 12. 31.)
(개정 2003. 12. 30.)
(개정 2004. 9. 30.)
(개정 2004. 11. 16.)
(개정 2004. 12. 31.)
(개정 2005. 6. 29.)
(개정 2005. 11. 10.)
(개정 2006. 1. 4.)
(개정 2006. 4. 6.)
(개정 2007. 1. 4.)
(개정 2007. 4. 9.)
(개정 2008. 1. 10.)
(개정 2008. 2. 20.)
(개정 2008. 6. 26.)
(개정 2008. 8. 4. 규칙 제237호)
(개정 2008. 12. 4. 규칙 제238호)
(개정 2008. 12. 24. 규칙 제240호)
(개정 2009. 1. 28. 직제규칙)
(개정 2009. 7. 9. 규칙 제254호)
(개정 2009. 9. 28. 규칙 제257호)
(개정 2010. 4. 19. 규칙 제261호)
(개정 2010. 6. 25. 규칙 제263호)
(개정 2010. 12. 31. 규칙 제269호)
(개정 2011. 2. 25. 규칙 제273호)
(개정 2011. 12. 28. 직제규칙)
(개정 2012. 3. 28. 규칙 제279호)
(개정 2013. 5. 31. 규칙 제288호)
(개정 2013. 6. 24. 규칙 제292호)
(개정 2013. 9. 17. 규칙 제295호)
(개정 2013. 12. 31. 규칙 제300호)
(개정 2014. 3. 28. 규칙 제304호)

(개정 2014. 6. 19. 규칙 제306호)
(개정 2014. 11. 26. 규칙 제310호)
(개정 2014. 12. 29. 규칙 제316호)
(개정 2015. 4. 1. 규칙 제319호)
(전부개정 2015. 12. 30. 규칙 제331호)
(개정 2016. 1. 19. 규칙 제334호)
(개정 2016. 7. 5. 규칙 제336호)
(개정 2016. 12. 23. 규칙 제340호)
(개정 2018. 4. 3. 규칙 제358호)
(개정 2018. 10. 31. 규칙 제364호)
(개정 2019. 5. 15. 규칙 제381호)
(개정 2019. 6. 27. 규칙 제385호)
(개정 2019. 11.1. 규칙 제388호)
(개정 2020. 8. 4. 규칙 제404호)
(개정 2021. 2. 15. 규칙 제411호)
(개정 2021. 4. 12. 규칙 제412호)
(개정 2022. 2. 18. 규칙 제419호)

제1장 총칙<전부개정 2015. 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률구조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률구조사건처리의 적정·신속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공단의 법률구조사건처리에 관하여는 법령·정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률구조사건”이란 법률구조신청사건, 법률상담사건,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을 말한다.
2. “법률구조신청사건”이란 법원, 군사법원, 헌법재판소(이하 “법원등”이라 한다)가 「법원조직법」 제2조,「군사법원법」 제2조 및 제3조,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의하여 권한을 가지는 모든 법률상의 쟁송에 대한 심판(재판, 절차 등을 포함한다) 및 행정심판의 대리 · 변호 · 보조 등 지원사건을 말한다.
3. “법률상담사건”이란 모든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사건을 말한다.

4.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이란 제2호, 제3호 이외의 사건으로서 공단의 사업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사건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 2000. 6. 8.> <개정 2009. 7. 9.> <개정 2011. 12. 28.> <개정 2015. 12. 30.>

제4조(관할) 공단 지부, 법문화교육센터, 출장소 및 지소(이하 “지부 등”이라 한다)에서 취급하는 법률구조사건의 토지관할 은 각 소재지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의 토지관할 에 의한다.

제2장 법률구조<전부개정 15. 12. 30.>

제1절 통칙

제1관 법률구조대상자 및 법률구조비용의 부담

제5조(법률구조대상자) ①법률구조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중에서 공단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구조대상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구조대상자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를 할 수 있다.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 당시 최종 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

만원 미만인 자에 한함

2. 선원법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 선원(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개정 2016. 7. 5.>

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사람에 한함 <개정 2016. 7. 5.> <개정 2018. 4. 3.>

3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일로부터 6월 이내인 자 포함)으로 연 매출 2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신설 2020. 8. 4.>

3의3.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구제급여 지급결정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신설 2021. 4. 12.>

4. 법원으로부터「민사소송법」에 의한 소송구조결정 또는「가사소송법」에 의한 절차구조결정을 받은 사건(이하 “법원소송구조사건”이라 한다)의 피구조자 및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지정한 사건의 신청인. 다만, 인지대 등 소송비용에 관한 소송구조결정만을 받은 피구조자는 제외한다.

5.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사건의 청구인 <개정 2018. 10. 31.>

6. 법원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사건(이하 “국선변호사건”이라 한다)의 피의자, 피고인, 행위자(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 포함)

7. 검사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선

정한 사건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피해아동 포함)

8. 그 밖에 생활이 어렵고 법을 몰라 스스로 법적 수단을 강구하지 못하는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

제6조(법률구조비용의 부담) ①변호사보수 및 소송비용 등 법률구조비용은 국가 또는 출연기관의 출연·지원·기부(이하 "출연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 출연금·지원금·기부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으로 법률구조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당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른 구조대상자 범위 및 대상사건, 구조요건 및 절차, 법률구조비용의 부담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관 구조신청 및 접수

제7조(구조신청) ①법률구조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자"라 한다)는 법률구조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지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뢰자가 문맹 등의 사유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부 등의 담당직원이 이를 대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의뢰자는 전항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는 주민등록증사본 등 의뢰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00. 9. 28.>

1. 주민등록표 등(초)본 1통
2.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3.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구조신청은 대리인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대리인은 의뢰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률상담의뢰사건 또는 민원사무의 처리결과 법률구조에 회부된 사건은 법률구조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뢰자로 하여금 제1항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지부 등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이송된 사건으로서 그 내용이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취지인 때에도 제4항과 같다.

제8조(접수) ①신청서를 제출 받은 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소정의 서류가 구비되었으면 이를 접수하되, 누락된 것에 대하여는 즉시 또는 기일을 정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한다.

②의뢰자가 구조대상자에 해당됨을 주장하는 경우 제7조제2항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더라도 담당직원은 기일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하고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③담당직원은 접수 전에 반드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이미 법률구조신청 하였거나, 다른 대리인 내지 변호인이 선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법률구조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의뢰자에게 설명하고 신청의 철회를 권유하여야 한다.

제9조(이익충돌사건의 특례) ①이익의 충돌로 인하여 의뢰자가 신청한 사건을 공단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할 때에는 지부장 등은 사건을 수임할 법률구조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건을 처리할 법률구조위원이 지정된 때에는 지부장 등은 사건기록을 법률구조위원에게 송부하고, 법률구조위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조사, 구조여부의 결정 및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

③이익이 충돌하는 사건의 처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④법률구조위원은 수임한 사건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사실조사 내용 등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의뢰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위원을 선임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지부장 등은 의뢰자에게 법원소송구조 및 공단과 업무협약이 체결된 법률구조 유관기관의 법률구조를 이용할 것을 안내할 수 있다.<본조 신설 '06. 1. 4><본항 신설 '18. 4. 3.>

제3관 사실조사<전부개정 15. 12. 30.>

제10조(조사담당변호사의 지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법률구조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지부장, 법문화교육센터장, 출장소장 및 지소장(이하 "지부장 등"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지부 등 소속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조사를 담당할 변호사(이하 "조사담당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 구조요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개정 2009. 7. 9.> <개정 2011. 12. 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담당변호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담당직원을 둔다. <개정 1998. 12. 31.> <개정 2019. 5. 15.>

제11조(조사사항) 조사담당변호사는 구조요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31.>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 해당 여부
2. 승소가능성 및 승소가능금액
3. 승소 후 집행가능성
4. 구조의 실익 및 타당성
5. 관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조사방법) 사실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의뢰자의 진술청취

2. 의뢰자로부터의 소명자료 및 입증자료 수집

3. 참고인의 진술청취

4. 형사기록 등 관련기록의 열람 및 등사

5. 사실조회 및 문서송부 등의 촉탁

6. 상대방의 진술청취 등 기타 적정한 방법

제13조(구조신청의 취하) ①지부장 등은 조사 중 의뢰자가 자력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사유로 구조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사건을 종결한다.

②의뢰자가 사실조사에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사건이송) ①지부장 등은 사건을 조사한 결과 타 지부 등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지부 등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지부장 등은 조사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그 사건의 구조여부결정에 필요한 사항 중 당해 지부 등에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충분히 조사하게 한 후 이송하여야 한다.

제15조(결정통지) 지부장 등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제2절 민사사건 등의 처리<전부개정 15. 12. 30.>

제1관 구조여부의 결정

제16조(민사사건 등의 범위) “민사사건 등”은 “법률구조신청사건” 중에서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 등”을 제외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15. 12. 30. 신설>

제17조(소송전구조) 지부장 등은 민사사건 등의 경우 소송 전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전구조결정을 하여 사건을 종결한

다. <개정 2000. 6. 8.>

제18조(소액사건 등의 구조특례) ①지부장 등은 사실조사결과 그 신청금액이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소액사건금액범위에 속하는 민사사건으로서 이사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소장등서류작성구조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1. 9. 17.> <개정 2006. 1. 4.>

②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는 소송구조신청서, 파산·개인회생신청서, 일반 민사·가사사건 등의 소장 등 작성·제출, 법원의 보정사항에 대한 보정, 그 밖에 절차상 필요한 업무를 한다. <신설 2006. 1. 4.> <개정 2013. 5. 31.>

제19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민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함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송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1. 구조대상자 및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2.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승소 후 집행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다만,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구조의 목적이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대리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송구조결정을 하여야한다. 다만, 구조대상사건이 아니거나 구조의 타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5. 6. 29.>

⑤지부장 등은 제2항 및 제4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승인을 요하는 사건인 경우에는 그 승인 여부가 결정된 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⑥지부장 등의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구조기각결정된 사건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제20조(구조의 우선순위) 예산상 사정 등으로 구조신청자를 전부 구조하기 어렵거나 우선하여 구조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구조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조할 수 있다.<본조 신설 '06. 1. 4>

제21조(구조의 승인) ①지부장 등이 소송구조결정한 본안사건의 구조결정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승인신청서와 구조대상자 등 구조요건에 관한 자료를 송부하여 이사장의 구조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집단임금·퇴직금사건 및 법원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는 본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9. 2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08. 12. 24.>

②이사장은 제1항의 구조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당부를 검토하여 구조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정서를 지부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지부장 등의 소송구조결정 당시에는 본안사건의 구조결정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소제기시 또는 소송진행 중에 청구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가액이 이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11. 16.> <개정 2008. 12. 24.>

④제2항의 규정에서 구조승인신청이 불승인된 때에는 구조기각결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29.>

제22조(중앙심사회) ①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민사사건 등의 이의신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본부에 중앙법률구조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4. 11. 16.>

②중앙심사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상임위원은 본부 구조국장으로 한다. 다만, 전체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을 외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9.> <개정 2004. 11. 16.> <개정 2009. 1. 28.> <개정 2019. 5. 15.> <개정 2019. 6. 27.>

③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변호사, 법률학 교수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4. 11. 16.> <개정 2019. 6. 27.>

④기타 중앙심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1. 16.>

제22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된다.<'19. 6. 27. 신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심사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사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사사건에 관하여 사실조사, 법률구조, 진술, 감정

또는 법 률자문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사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사건을 담당한 위원에게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사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③당사자는 심사를 담당한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척·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척·기피 등 신청에 관한 결정은 중앙심사회가 하고, 해당 위원 및 당사자 쌍방은 그 결정에 불복하지 못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제척·기피 등 신청이 있는 때에는 중앙심사회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심사사건에 대한 심사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해당 심사사건의 직무집행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⑦ 상임위원이 제척 등이 된 경우 위원장이 직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23조(이의신청의 심사 등) ①의뢰자가 제19조제6항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지부장 등을 경유하여 중앙심사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1. 16.>

②지부장 등은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중앙심사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는 중앙심사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각하한다. <신설 2008. 12. 24.> <개정 2019. 6. 27.>

1. 2회 이상 반복신청된 이의신청사건. 다만, 새로운 증거나 판례의 변경 등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중앙심사회에서 재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구조 대상자가 아니거나 법률구조 대상사건이 아닌 경우
3. 법률구조신청사건이 이의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4.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5. 법률구조신청사건이 제소기간이 도과하거나 법원 등에서 사건이 종결되어 심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④중앙심사회는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파기하여 환송 또는 자판한다. 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지부장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⑤제4항에 의하여 사건이 환송된 경우에는 지부장 등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여 환송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조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개정 2019. 6. 27.>

⑥제4항의 경우에 중앙심사회에서 파기이유로 한 판단은 지부장 등의 결정을 기속한다. <개정 2008. 12. 24.>

⑦중앙심사회 위원장은 제3항, 제4항, 제5 항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환송 사건에 대한 구조 여부 등의 결정 결과는 지부장 등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개정 2019. 6. 27.>

제2관 소송구조

제24조(소송구조사건의 관리) ①소송구조결정된 사건에 대한 관리는 구조를 결정한 지부 등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할 법원이 있는 타 지부 등에서 사건을 관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타 지부 등에서 사건을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당해 기관은 사건기록을 타 지부 등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지부 등의 담당직원은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사건별로

소송의 진행상황 및 소송비용의 상환·면제결정상황 등을 소송구조 사건관리카드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25조(수임변호사의 지정) ①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결정한 사건의 소송수행을 위하여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소송수행을 담당할 변호사(이하 “수임변호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송구조변호사로 지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당해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9. 6. 30.>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18. 10. 31.>

②지부장 등은 지부 등의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기타 수임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부 등의 법률구조위원 또는 인근 지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수임변호사를 지정한다. <개정 1999. 6. 30.>

③지부장 등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조경력 5년 이내인 변호사로서 법률구조위원에 위촉된 자가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률구조절차를 밟은 사건을 소송구조 결정한 경우, 그 법률구조위원을 해당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5. 15.>

제26조(법률구조계약) 수임변호사가 지정되었을 때에는 지부장 등이 공단을 대리하여 의뢰자와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에는 지부장 등이 공단을 대리하여 수임변호사 및 의뢰자와 3자간에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1999. 12. 29.>

제27조(소송비용의 예납) ①제6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출연기관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부장 등은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의뢰자로 하여금 소제기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예납하도록 할 수 있고, 사건진행 중 감정, 증거

신청,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소송비용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의뢰자로 하여금 그에 소요되는 소송비용을 추가로 예납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7.> <개정 2015. 12. 30.>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부장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소송비용 예납을 유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출연기관의 소송비용 대납이 예정된 사건
2. 금전채권의 만족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건 등 사건의 성질상 소송비용을 예납받지 않더라도 소송비용 상환에 지장이 없는 사건
3. 기타 법률구조법의 입법목적과 사회정의 및 형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예납을 유예할 필요가 있는 사건

③소송비용 예납의 방법, 기한 및 처리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8조(소송비용의 지급) ①지부장 등은 법률구조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법률구조사건기록을 수임변호사에게 인계하고 수임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소제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 중 청구취지의 확장, 검증·감정의 실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소송비용의 추가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지부장 등은 수임변호사의 청구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증액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지부장 등은 법원소송구조사건의 의뢰자가 제5조제2항제4호를 제외한 민사사건 등에 대한 구조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3. 12. 30.> <개정 2008. 6. 26.>

제29조(구조의 중단) ①수임변호사는 소송구조결정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구조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의뢰자가 구조대상자가 아님이 밝혀지는 등 법률구조사유가 없음이 판명된 때

2. 의뢰자가 법률구조계약을 위반한 때

3. 의뢰자가 수임변호사의 소송수행에 필요한 협조요청에 불응한 때

4. 기타 사정변경으로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게된 때

5. 의뢰자가 소송비용을 예납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구조중단요청을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중단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선대리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국선대리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구조중단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18. 10. 31.>

④법원소송구조사건이 당해 심급이 완결되기 전에 법원에 의하여 구조결정이 취소되거나 사건이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종결된 때에는 구조중단결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 8. 27.>

제30조(수임변호사의 교체) 지부장 등은 수임변호사가 부적임하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수임변호사를 해임하고 다른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수임변호사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운 수임변호사의 지정 및 소송비용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12. 29.>

제31조(상소심의 구조) ①지부장 등은 수임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원심판결에 대한 상소심에서의 구조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전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심의 구조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본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집행사건의 구조) ①지부장 등은 상대방이 승소금을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사건에 대한 구조를 할 수 있다.

②의뢰자가 공단에 집행사건만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구조

신청사건으로 보아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2. 12. 31.>

제33조(보전사건 등의 구조) 의뢰자가 공단에 본안사건 외에 보전처분 등 법원에 대한 신청사건만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이를 법률구조신청사건으로 보아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수임변호사의 임무 등) ①수임변호사는 민사소송법 제1편 제3장 제3절에 규정된 소송상의 구조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②수임변호사는 의뢰자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받지 못한다.

③수임변호사가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을 배당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소송수행을 하여야 한다.

④수임변호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심급마다 소제기보고 및 소송종료보고를 하여야 하고, 지부장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4.>

⑤수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자에게 소송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 9. 28.>

⑥수임변호사는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제21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5.>

제3관 소송비용의 산정, 상환 및 면제

제35조(승소가액의 산정) ①각 사건에 관한 승소가액은 각 심급별·사건별로 산정한다.

②승소가액의 산정시점은 각 심급의 판결선고시로 한다. 다만, 토지, 건물 기타 물건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은 소제기시로 한다.

③토지에 관한 사건의 승소가액산정시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개정

2001. 9. 17.> <개정 2009. 9. 28.>

④소제기 후 당사자간에 화해를 하였으나 화해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 화해내용을 금전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소송진행 중 의뢰자 스스로 청구를 포기한 경우 등의 승소가액은 당해 사건의 소가의 2분의 1로 한다.

⑤집행사건의 경우에 승소가액은 배당액으로 하고,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보전사건의 승소가액은 피보전권리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6. 7. 5.>

⑥행정심판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사건 및 헌법소원사건의 승소가액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비재산권상의 소에 대한 소가산정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신설 2000. 6. 8.> <개정 2001. 9. 17.> <개정 2003. 12. 30.>

⑦각 사건의 승소가액의 산정은 이 규칙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가산정방법을 준용한다.

⑧기타 이 규칙에 의하여 승소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 등에 의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승소가액을 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9. 17.>

제36조(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인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 ①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인 경우의 변호사보수는 제35조 규정에 의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각 심급별, 사건(조정신청사건 포함)별로 별표 1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국선대리사건은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급 받은 국선대리인 보수를 변호사보수로 산정하고, 법원소송구조사건(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사건을 포함한다)은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구조변호사보수와 제40조제6항에 따라 패소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보수를 당해 사건의 변호사보수로 산정한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6. 1. 4.> <개정 2013. 5. 31.> <개정 2015. 4. 1.> <개정 2015. 12. 30.> <개정 2016. 7. 5.> <개정 2018. 10. 31.>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전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1.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개정 2002. 12. 31.>
2. 변론기일(변론준비기일 포함) 또는 심문기일 진행 없이 종료된 경우 <개정 2002. 12. 31.> <개정 2007. 4. 9.>
3. 행정심판사건. 다만, 구술심리를 한 행정심판사건은 제외한다. <신설 2003. 12. 30.>

③집행사건, 보전사건 등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02. 12. 31.>

1. 부동산 등에 대한 집행사건, 배당요구(채권계산서)사건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개정 2002. 12. 31.> <개정 2019. 11. 1.>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사건, 재산명시신청사건, 집행의 정지·취소사건 및 기타 제1호 이외의 집행사건은 70,000원 <개정 2002. 12. 31.>
3. 보전사건 중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사건은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의 2분의 1.
4. 파산사건 및 개인채무자회생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제35조에 의한 승소가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00원,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300,000원으로 하고, 파산사건 및 개인채무자회생사건 관련 보전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7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1. 9. 17.> <개정 2

004. 9. 30.>

5. 행정심판사건과 관련된 집행정지사건은 같은 항 제3호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 12. 30.>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보수가 1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30,000원으로 하고, 제3항제1호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보수가 7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70,000원으로 한다. 다만, 집행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가 법원에서 배당된 서기료보다 낮을 때에는 서기료를 변호사보수로 한다. <신설 2000. 12. 27.> <개정 2004. 9. 30.> <개정 2006. 1. 4.> <개정 2016. 12. 23.>

⑤배상명령신청사건, 독촉사건, 의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구조를 중단한 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1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7.> <개정 2001. 9. 17.>

⑥제3항제3호 이외의 보전사건, 증거보전신청사건, 공시최고신청사건, 제소전화해신청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공탁신청사건 및 기타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70,000원으로 한다.다만, 심문 등을 거친 각종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는 13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00. 12. 27.> <개정 2008. 2. 20.>

⑦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전신청, 본안소송, 집행신청 등을 한 경우 변호사보수는 별개로 산정 한다. <개정 2000. 12. 27.> <개정 2002. 12. 31.>

⑧<삭제 '16. 1. 19.>

제37조(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 변호사보수의 산정) ①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의 변호사보수는 각 심급별·사건별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착수금의 산정은 사건의 구조결정가액을 기준으로, 성공보수의 산정은 그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각 별표 2를 적용한다. 다만, 착수금 및 성공보수 합산액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

5. 12. 30.> <개정 2020. 1. 17.>

③제2항의 구조결정가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6조, 제27조 및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에서 정한 소가산정방법을 준용하며, 승소가액 및 성공보수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35조, 제36조 제2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 12. 27.> <개정 2002. 12. 31.>

제38조(변호사보수의 조정) ①지부장 등은 소송의 난이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보수를 상당한 범위 내에서 감액 산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산정액은 수임한 사건의 당해 심급의 모든 변호사보수를 합산한 금액의 1/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12. 27.>

③지부장 등은 사건의 복잡성, 변론기일의 과다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변호사보수가 현저히 낮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정된 변호사보수의 30%범위 내에서 증액산정할 수 있다.

제39조(국선대리인보수 및 소송구조변호사보수의 귀속) ①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국선대리인보수 및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구조변호사보수는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7.> <개정 2018. 10. 31.>

②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국선대리인보수 및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구조변호사보수의 납입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00. 6. 8>

제40조(소송비용의 상환) ① 지부장 등은 각 심급별·사건별로 소송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의뢰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산정하여 소송비용액(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에 대한 상환결정을 하여 의뢰자로부터 이를 상환받는다. 다만, 국선대리사

건의 변호사보수는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헌법재판소나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지급받은 국선대리인보수를, 법원소송구조사건의 변호사보수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소송구조변호사보수를 공단에 납입한 때에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2. 8. 27.> <개정 2003. 12. 30.> <개정 2018. 10. 31.>

②수임변호사는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을 임의로 변제받을 수 있고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지부장 등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지부장 등은 인계받은 금원에서 소송비용을 정산하고 잔액을 의뢰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의뢰자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비용상환결정 전이라도 개산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지부장 등은 의뢰자의 자력 등을 고려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지부장 등은 의뢰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승소금을 임의로 변제받지 못하는 등으로 소송비용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수임변호사를 통하여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임의로 상환받을 수 있다.

⑤지부장 등은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절차를 통하여 패소자인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다.

⑥지부장 등은 법원소송구조사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변호사보수가 제36조에 의하여 산정된 변호사보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패소자인 상대방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절차 등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8. 27.>

제41조(소송비용의 상환면제) ①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지부장 등이 상환면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상환면제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0. 6. 8.> <개정 2008. 12. 24.>

1. 승소가액 500만원 이하인 사건
2. 패소한 사건
3. 기타 소송비용의 상환이 부적당 또는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이사장은 지부 등의 사건에 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소송비용의 상환면제를 할 수 있다.

제42조(소속변호사에 대한 소송성과급 등의 지급) ①소속변호사에게는 의뢰자로부터 상환받은 변호사보수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소송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 8. 7.><개정 1999. 1. 30.><개정 1999. 12. 29.><개정 2000. 12. 27.><개정 2010. 12. 31.><개정 2022. 2. 18.>

②제1항의 소송성과급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1999. 1. 30.> <개정 2010. 12. 31.>

③법률구조위원인 수임변호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심급의 착수금을 지급 받고 소송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성공보수는 공단이 소송비용을 상환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는다.

④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위원을 수임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착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성공보수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0. 1. 17.>

⑤지부장 등은 소제기 후 청구취지가 확장되거나 감축된 경우에는 제3항의 수임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일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대상 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소송성과급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신설

2021. 2. 15.>

제3절 형사사건 등의 처리

제43조(형사사건 등의 범위) ①“형사사건 등”은 “법률구조신청사건” 중에서 형사사건,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등 각종 피해자변호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1.>

②전항의 형사사건 중 공판절차에 회부되지 않은 사건은 “형사사건 등”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구속사건(피의자가 구속취소, 구속적부심사결정, 기소전보석결정 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석방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재심사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사건의 구분) ①사건은 심급별로 별개로 본다.

②보석·구속집행정지·위탁변경 신청사건은 당해 사건과 별개로 본다.

③형사변호 진행 중인 사건의 피고인이 다른 법률의 위반으로 추가로 기소된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이를 별개로 본다.

제45조(구조여부 결정) ①조사담당변호사는 형사사건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조여부에 대한 조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사실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29.>

②전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제11조의 구조요건 등을 심사한 결과 구조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결정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조기각결정을 한다. <개정 1999. 12. 2.>

1. 구조대상자가 아닌 때
2. 구조대상사건이 아닌 때
3. 기타 구조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국선변호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검사)이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한 때에 구조결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6. 30.> <개정 2012. 3. 28.>
④지부장 등은 구조결정된 사건의 변호를 위하여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수임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검사)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은 당해 사건의 수임변호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6. 30.> <개정 2012. 3. 28.>
⑤지부장 등은 지부 등의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이 모두 사고가 있거나 기타 수임변호사로 지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지부 등의 법률구조위원 또는 인근지부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중에서 수임변호사를 지정한다. <신설 1999. 6. 30.>
⑥형사사건 등의 수임변호사는 구조결정된 후 제2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구조중단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의견서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지부장 등에게 보고한다. <신설 1999. 6. 30.> <개정 1999. 12. 29.>
⑦제6항의 보고를 받은 지부장 등은 구조중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99. 6. 30.> <개정 1999. 12. 29.>
⑧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 법원(검사)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구조중단결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 6. 30.> <개정 2012. 3. 28.>
⑨제44조제3항의 구조 여부는 지부장 등이 수임변호사의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신설 1999. 6. 30.> <개정 1999. 12. 29.>
⑩지부장 등은 제2항, 제7항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9. 6. 30.>
⑪제2항에 따른 구조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의뢰자는 1차에 한하여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부장 등을 경유하여 이사장

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⑫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법원(검사)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지부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6. 30.> <개정 2012. 3. 28.>

제46조(이의신청의 심사 등) ①이사장은 제45조제11항의 이의신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원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구조결정을 한다. <개정 1999. 6. 30.> <개정 1999. 12. 29.>

②이사장은 전항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당해 지부장 등에게 송부하고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변호인에 대한 변호활동비 등의 지급) ①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인 수임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변호활동에 필요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법률구조위원인 수임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건위임시에 전항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③법원(검사)으로부터 국선변호인으로 선정된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개정 2012. 3. 28.>

제48조(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의 국선변호 보수 등 귀속) ①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법원(검사)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선변호 보수 및 비용은 공단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8.>

②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법원(검사)으로부터 지급받은 국선변호 보수 및 비용의 납입절차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1999. 6. 30.> <개정 2012. 3. 28.>

제49조(민사사건 등 처리절차의 준용) 형사사건 등의 처리에 있어 본 절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

위 내에서 민사사건 등의 처리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법률상담

제50조(법률상담사건의 범위) 법률상담사건은 의뢰자가 신청한 모든 법률사무에 관한 상담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 12. 29.>

제51조(법률상담실의 설치·운영) ①지부 등에는 법률상담을 위하여 법률상담실을 개설하고 소속직원, 공익법무관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상담요원을 둔다.

②상담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상담에 응하여 의뢰자에게 필요한 법적조언을 하여야 한다.

제52조(상담의 방법 등) ①상담은 면접·서신·전화·사이버상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02. 8. 27.>

②상담직원은 상담결과 법률구조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률구조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상담직원은 상담결과 타 지부 등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자를 해당 지부 등 또는 타 기관으로 안내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법률사무지원 <신설 2015. 12. 30.>

제53조(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의 범위)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은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공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4조(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의 처리 및 비용 부담 등) “기타 법률사무지원사건”의 대상자, 지원 내용, 사건 처리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2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건의 정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사건”(이하 ‘채무자대리사건’이라 한다)이란,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채무자를 보호하고 정상적 경제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사건을 말한다. <신설 2020. 1. 17.>

제54조의3(대상사건의 범위 등) ① 채무자대리사건의 대상자는 불법사금융피해자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그 대상사건은 채무자대리인 선임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부당이득금반환사건 등으로 한다.

② 전항의 사건처리 관련 비용 및 변호사보수는 금융위원회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채무자대리사건 대상자, 대상사건, 비용부담, 사건처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 1. 17>

제5장 민원사무<전부개정 ‘15. 12. 30.>

제55조(정의) 민원사무라 함은 민원인이 공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0. 12. 31.>

제56조(민원서 처리) ①본부와 지부 등에 접수된 민원서(전자정부법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가능한 한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1.>

②민원서는 그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처리한다.

1. 법률구조회부

민원내용이 법률구조를 신청하는 취지인 때

2. 상담회부

민원내용이 상담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3. 기록편철

민원내용이 공단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관련되는 등 관련사건기록에 편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 이송

민원내용이 타 지부 등 또는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공람종결

민원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민원서를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때

6. 기타 <신설 2010. 12. 31.>

민원내용이 전 각 호 이외의 방법으로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전부개정 '15. 12. 30.>

제57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가족관계등록부사건에 대한 특칙 <신설 2008. 8. 4.><전부개정 '15. 12. 30.>

제58조(적용 범위) ①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이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법률구조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전항의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서 공단에 출연하는 금원에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한다.

<본조 신설 '08. 8. 4>

제59조(구조대상사건)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정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으로 한다.<본조 신설 '08. 8. 4>

제60조(구조대상자 및 소명서류) ①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국민으로 한다.

②전항의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시(구)·읍·면·동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사실확인서로 한다.

<본조 신설 '08. 8. 4>

제61조(일반사항)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의 처리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사건 등의 처리규정을 준용하고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본조 신설 '08. 8. 4>

제8장 6·25전쟁 전시납북자가족에 대한 특칙 <신설 2013. 12. 31.><전부개정 '15. 12. 30.>

제62조(적용 범위) ①본 특칙은「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전시납북자 가족으로 결정된 자의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에 대한 법률구조에 한한다. <신설 2013. 12. 31.>

②전항의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에 대하여는 사단법인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공단에 출연하는 금원으로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한다. <신설 2013. 12. 31.>

제63조(구조대상사건) 법률구조를 할 수 있는 사건은 전시납북자를 사건본인으로 하는 실종선고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으로 한다. <신설 2013. 12. 31.>

제64조(구조대상자 및 소명서류) ①실종선고심판청구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시납북자가족(납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으로 결정한 자로 한다. <신설 2013. 12. 31.>

②전항의 구조대상자임을 소명하기 위하여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가 발행한 납북자결정통지서 등 전시납북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한다. <신설 2013. 12. 31.>

제65조(일반사항) 전시납북자가족의 실종선고심판청구사건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정정사건 처리에 있어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사건 등의 처리규정을 준용하고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13. 12.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심사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부출

장소에서 심사회에 회부하여 구조요건 및 구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사건이 있는 경우에 당해 지부출장소장은 자체심사회가 설치될 때까지는 그 사건기록을 지부장을 경유, 지부심사회에 송부하여 그 결정을 얻어야 한다.

②지부심사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된 사건에 대하여 구조요건 및 구조여부를 심사결정한 때에는 지부장은 그 결정서와 사건기록을 당해 지부출장소에 환송하여야 한다.

부 칙 <1990. 6. 2.>

이 규칙은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0년 1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비용상환결정이 이루어진 사건에 관한 수임변호사의 보수지급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2.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3. 10. 4.>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 18.>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5. 20.>

이 규칙은 1995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가사사건의 처리와 관련 이 규칙 시행일 이

전에 소송구조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1998. 8. 7.>

이 규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0. 8.>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형사사건의 구조대상자와 관련한 제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6조를 삭제한다.
2. 별표 2의 기구표에서 “본부, 지부, 직할출장소 및 출장소 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삭제한다.

②위임전결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위임전결기준에서 3. 행정실 소관사항 중 일련번호 16의 심사위원란의 “본부 및 지부 등”을 “형사”로 한다.
2. 별표의 위임전결기준에서 7. 사건과 소관사항 중 일련번호 4의 “본부심사회 단위업무” 란을 전부 삭제하고 일련번호 5의 단위업무명 중 “전국법률구조심사회개최결과보고”를 삭제한다.

③계설치및주무지정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각계별업무분장표에서 지부사무국(과) 사건계 분장업무 중 “1. 지부법률구조심사위원회운영”을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민사·가사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②민사·가사사건의 소송비용산정 등에 관한 규정은 소송구조결정

일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비용상환결정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9. 1. 30.>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30.>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제36조 제1호의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직제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5조 제3항 중 별표2의 기구표에서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삭제한다.
2. 제11조 부서별업무분장표 별표 8의 부서 구조 2부에서 사건과 분장업무 중 2.의“,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삭제한다.

②위임전결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1항의 별표 위임전결기준에서 2. 행정실 소관사항 중 일련번호 16의 각종위원회 위원 임·면, 위·해촉, 단위업무명 심사위원란 중 “형사” 및 해당 표시란을 각 삭제한다.
2. 제3조 제1항의 별표 위임전결기준에서 8. 사건과 소관사항 중 일련번호 3의 단위업무명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 안건접수, 개최결과 보고, 심사결정에 따른 업무처리”와 결재권자란 중 표시방법란을 각 삭제한다.

③계(係)설치및주무지정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2의 각계별업무분장표에서 사건과 지도계 분장업무

중 1. “,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를 삭제한다.

제3조(사건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당시 법원 또는 검찰에 계속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소송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형사법률구조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은 이 규칙 시행일에 모두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 31.>

이 규칙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소액사건처리지침 중 “약식소송”을 “소장등서류작성”으로 한다.

②약식소송구조사건관리방침 중 “약식소송”을 “소장등서류작성”으로 한다.

부 칙 <2000. 9. 28.>

이 규칙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에 관한 변호사보수비용의 산정, 조정 및 수임변호사에 대한 소송성과급 등의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에 관한 승소가액 및 변호사보수비용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2.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법원소송구조사건으로 법률구조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02. 12. 31.>

이 규칙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3. 12. 30.>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파산사건 및 동 사건 관련 보전사건의 변호사보수비용은 소송구조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04. 11. 16.>

이 규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항 제16호와 제30조의2 제8항은 노동부에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실이 신고된 사건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 11. 10.>

이 규칙은 승인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10월 19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6.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부 칙 <2006. 4. 6.>

이 규칙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칙 제30조의 2 제8항의 개정규칙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상환결정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에 대한 변호사보수비용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 10.>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항 제1호, 제15호, 제2항 제1호,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건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8.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6장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08. 12.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09.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9.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제5조의3 제1항 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09.11.28.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0.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

조의2 제1항 제34호의 대상자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2.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어변경) 제38조 제3항·제4항·제8항·제11항, 제39조 제3항 및 제39조의2 제1항·제2항 중 "법원"을 각각 "법원(검사)"으로, "선정"을 각각 "선정(지정)"으로 한다.

부 칙 <2013. 5.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제1항 제28호 중 "절차구조"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시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7항 및 제5조 제1항 제36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으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으로 한다.
2. 제5조 제1항 제27호 "개인파산·개인회생사건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를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지정서"를 "법원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지정서"로 한다.

②국선대리사건및국선변호사건에관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제5항"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

0조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6항”으로 한다.

2. 제2조 제1항 제3호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로,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성폭력피해자의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대리 사건”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른 변호사선임 특례 사건”으로 한다.

부 칙 <2013.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장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개정규정은 「6·25전쟁 납북피해자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 사무국 존속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4.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4.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4. 11.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4년 9월 29

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5조의 2 제1항 제6호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2014.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소송구조결정된 사건의 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5. 4. 1.>

이 규칙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부개정 2015.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범의 개정) 생략

부 칙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6. 7.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인은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의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8. 4.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민사 등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8. 10. 31.>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5.>

이 규칙은 2019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7.>

이 규칙은 201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

이 규칙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0.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1. 2.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소송성과급의 지급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2조 제6항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 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승인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90. 11. 7><개정 '00. 12. 27><개정 15. 12. 30.>

수임변호사가 소속변호사(공익법무관)인 경우 변호사보수기준표

가 액	변호사보수비율
500만원까지(가액×2.6/100)	2.6%
5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가액×2.8/100)	2.8%
1,000만원초과 2,000만원까지 [28만원+(가액-1,000만원)×2.5/100]	2.5%
2,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53만원+(가액-2,000만원)×2.5/100]	2.5%
3,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78만원+(가액-3,000만원)×2.3/100]	2.3%
5,000만원초과 7,000만원까지 [124만원+(가액-5,000만원)×2.4/100]	2.4%
7,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172만원+(가액-7,000만원)×2.1/100]	2.1%
1억원초과 2억원까지 [235만원+(가액-1억원)×1.15/100]	1.15%
2억원초과 5억원까지 [350만원+(가액-2억원)×0.56/100]	0.56%
5억원초과 [518만원+(가액-5억원)×0.25/100]	0.25%

[별표 2]<신설 '90. 11. 7><개정 '00. 12. 27><개정 '15. 12. 30.>

수임변호사가 법률구조위원인 경우 변호사보수기준표

가 액	착 수 금	성 공 보 수
500만원까지	(가액×2.6/100)×1/2	(가액×2.6/100)×1/2
500만원초과 1,000만원까지	(가액×2.8/100)×1/2	(가액×2.8/100)×1/2
1,000만원초과 2,000만원까지	[28만원+(가액-1,000만원)×2.5/100]×1/2	[28만원+(가액-1,000만원)×2.5/100]×1/2
2,000만원초과 3,000만원까지	[53만원+(가액-2,000만원)×2.5/100]×1/2	[53만원+(가액-2,000만원)×2.5/100]×1/2
3,000만원초과 5,000만원까지	[78만원+(가액-3,000만원)×2.3/100]×1/2	[78만원+(가액-3,000만원)×2.3/100]×1/2
5,000만원초과 7,000만원까지	[124만원+(가액-5,000만원)×2.4/100]×1/2	[124만원+(가액-5,000만원)×2.4/100]×1/2
7,000만원초과 1억원까지	[172만원+(가액-7,000만원)×2.1/100]×1/2	[172만원+(가액-7,000만원)×2.1/100]×1/2
1억원초과 2억원까지	[235만원+(가액-1억원)×1.15/100]×1/2	[235만원+(가액-1억원)×1.15/100]×1/2
2억원초과 5억원까지	[350만원+(가액-2억원)×0.56/100]×1/2	[350만원+(가액-2억원)×0.56/100]×1/2
5억원초과	[518만원+(가액-5억원)×0.25/100]×1/2	[518만원+(가액-5억원)×0.25/100]×1/2